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전업 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 중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전업 지원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체받으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한시정원) ①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전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둔다.

②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0000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체받는다.

[별표 5]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7조 관련)

1. 제37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4월 29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2. 제37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연구관 이하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7조(한시정원)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u>	<u>제37조(한시정원) ①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전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둔다.</u> <u>②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4